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0회] 제2차 정례회 (2025. 11. 28.)

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
검토보고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출경위

가. 의안번호: 25-148

나. 제출자: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5년 11월 14일(금)

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8일(화)

2. 제출사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: (재)마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

다.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

-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시설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, 마포지역 문화 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

라. 출연금

-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6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를 통해 출연 금액 결정

마. 추진일정

- 2025. 11월: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수립
- 2025. 11월: 구의회 의결 요청
- 2025. 12월: 구의회 의결
- 2025. 12월: 예산 심의 및 확정

4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및 제11조(운영재원 등)

5. 검토보고

- 본 동의안은 2026년도 (재)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(出捐)에 대하여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.
- 출연대상인 (재)마포문화재단은 2007년 마포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되었으며,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, 전시, 축제 사업, 문화돌봄 예술치유 사업, 구민 문화예술교육, 생활체육 진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.
- 출연목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개발·시행,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.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, 본 동의안은 출연의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, 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마포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※ 출연 현황

(단위: 천원)

회계연도	총예산	자체수입	출연금	비 고
2021	10,478,618	3,279,933	7,198,685	
2022	11,672,347	4,237,738	7,434,609	
2023	12,857,142	6,899,176	5,957,966	
2024	13,024,312	7,255,261	5,769,051	
2025	12,255,582	5,747,967	6,507,615*	

* 2025년 추경예산 포함: 748,614천원(다동이 할인 등)

-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은 출자·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,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·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·낭비성 출자·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.
- 또한,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·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- 따라서, 이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계획에 제출된 출연금(7,388,682천 원)은 별도의 예산안 심의시 문화재단의 그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 확정됨.

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〉

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■ 지방재정법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제20조(재정 지원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**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2.12.31. >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